

Korean Tax Update

October 2015, Issue 16

[조세뉴스]

기획재정부, OECD/G20 BEPS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 발간

지난 10.6 일 OECD 는 G20 과 합동으로 역외탈세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에 대한 국제적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BEPS 프로젝트 최종보고서를 발표. 최종보고서는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분야별 대응조치를 담은 13 개 과제 보고서와 프로젝트 전반을 설명하는 성명서(Explanatory Statement)로 구성되어 있음. 각 과제별 보고서와 성명서는 국내법 개정, 조세조약 제.개정 등과 같은 이행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3 대 주요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됨.

- 과세일관성확보 : 국가간 세법 차이, 특혜 조세제도 등을 활용한 조세 회피 방지
- 국제기준 강화 및 투명성 확보 : 새롭게 변화하는 국제거래환경을 반영한 국제기준 정비 및 기업 거래정보의 공유, BEPS 분석 등을 통한 투명성 제고
- 확실성 강화 : 과세 원칙을 보다 확실히 예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들의 공격적 조세 회피 계획 수립을 사전 차단

기획재정부, 세제실'조세정책심의회'본격 가동

지난 10.13 일 기획재정부는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세제실 조직을 개편함. 조세정책 전반의 총괄.조정.분석.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세정책관을 조세총괄정책관으로 개편하는 한편,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득법인세정책관을 신설하고, 국제조세 분야를 관세 분야와 통합하여 관세국제조세정책관으로 새롭게 운영. 특히,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개편 취지에 맞춰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 가동할 계획임.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설명회개최

최근 기재부, 법무부 공동으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에 대해 조세전문가 및 관심 있는 분을 대상으로 (i)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도입배경 (ii)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령 (iii) 자진신고 대상, 신고.납부 절차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함

국세청, 2015 년 국세통계 2 차 조기 공개

지난 10.15 일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12 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음. 국민들이 국세통계정보를 보다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연도 중에 생산 가능한 통계는 미리 공개하고 있으며 금번 2 차 조기공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조기공개).

- 신용카드 세금 수납액은 3.1 조 원으로 증가 추세, 부가가치세가 많아
- 증여 재산가액은 '13 년 이후 계속 증가, 수증자는 40 대가 많아
- 법인 세액공제 금액은 소폭 감소, 일반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감소
-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증가 추세, 소매업·음식업 순으로 많아
- 증권거래세는 '12 년 이후 계속 감소하다가, '14 년에 소폭 증가
- 외국인 투자법인과 외국법인의 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외국법인은 미국 및 일본이 거의 절반에 육박)
-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액은 증가 추세, 특히 '14 년에 2.5 배로 급증

[예규·판례]

중복세무조사여부

대법 2013 두 6206, 2015.09.10

- 1 차 세무조사 : 2001 년에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1996 년도부터 1998 년으로 하여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때 과세대상 기간은 1996 년부터 2000 년까지임.
- 2 차 세무조사 : 2005 년에 조사대상기간을 2000 년으로 조사사유를 '주식변동내용 확인'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함.
- 2 차 세무조사는 원고의 2000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거둬진 세무조사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1 차 세무조사에서 2 차 세무조사 대상인 '주식변동내용 확인'이 제외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음. 즉 조사대상 통보내용과 상관 없이 실제 조사 결과로 재조사 여부를 판단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서울행정 2015 구합 56038, 2015.10.7.

- 사업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사업관련성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D 사는 캐나다회사를 자회사로 두게 됨으로서 이 호텔을 이용하여 숙박업 영역을 캐나다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게되었으며, 세계적 숙박체인인 힐튼에 가입하여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

른 권리를 향유하고 제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되어 청구법인에 대한 소비자 신뢰자제도 상승되었으므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며, 대리납부 의무 없다고 판단

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여부

조심 2015 중 3329, 2015. 9. 30

- 청구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에 게임개발이 명시되어 있고 2004년 조직도에 게임개발팀이 있으며, 쟁점게임 개발 전 다른 게임을 개발한 적이 있는 점, 게임개발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게임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대여금은 쟁점게임 개발에 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시 익금에 산입하는 범위

서면국제세원-1626, 2015.09.15

- 내국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법과 세액공제방법 중 세액공제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 94 조 제 8항에 의하여 계산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내국법인이 세액공제한 도 내에서 실제로 세액공제받은 간접외국납부세액만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은 아님.

연부취득 중 계약해지시 취득세 환급여부

지방세운영과-2788, 2015.09.02

- 연부 형식의 계약으로 총 매매대금 중 85.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일에 납입하고 선납할인의 형식으로 할부이자인 10.2%를 차감 받는 과정에서 451 억원이 남게 되었다면 해당 금액은 사회통념상의 미미한 금액이 아닌 것이라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된 사실상의 취득이었다 볼 수 없는 바 연부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하여야 하는 통칙에 의거(「지방세기본통칙」7-5 제 4 호), 연부취득 중 마지막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계약해지청구권에 의해 매매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열병합발전소 내 시설 취득시 적용세율

지방세운영과-3115, 2015.10.05

발전소 내 축열조 등 옥외저장시설 및 급·배수시설을 준공하였다면 「건축법」 제 2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면서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설에도 해당되는 경우에 있어 납세자가 시설로 취득신고를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할 수 있음. 발전소 내 구내 변전·배전시설 등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생산시설은 건축물의 유지관리 목적이 아닌 생산시설의 일부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본 자료는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어떤 기업이나 개인의 특정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자료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PMG 삼정회계법인

Tax Center of Excellence

kr-fmtaxtcoe@kr.kpmg.com

© 2015 Samjong KPMG.,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